

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745호)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1. 5.

김향숙 의원 등 7인

2. 제안이유

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
라. 보호구역의 공표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로교통법」,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등
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5호

- 예고기간: 2024. 1. 5.(금) ~ 2024. 1. 10.(수) [5일간]
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의견

○ 제정 목적

-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, 노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, 조례의 목적, 군수의 책무, 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및 보호구역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1조)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,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2 제1항 제3의2호에 의하면 군수는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 제정 및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(안 제2조)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, 상위법 및 관련 규칙에서 정한 용어를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(안 제3조)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, 노인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,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주민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(안 제4조) 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으로,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2 제3의2호에 따라 조례로 별도 정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① 관련법령에 따른 전통시장 ② 의료기관 ③ 약국 ④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경로 ⑤ 사고발생 우려지역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(안 제5조) 보호구역의 공표에 관한 사항으로, 보호구역 지정현황, 위치 및 범위, 관련 시설물 등을 누리집, 읍면 게시판,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등 통해 공표하고, 보호구역 신규 지정 또는 해제시 재공표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, 조례 제정 목적과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,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- 특히, 고성군 노인 보행 교통사고 건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(관련통계 참고)으로,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며

[참고] 고성군 노인 보행 교통사고 현황(2020~2022년)

(단위: 건, 명)

구 분	2020	2021	2022
사고(건)	18	21	28
사망(명)	1	3	1
부상(명)	17	18	27

※ 출처: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

- 향후,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 추진은 물론, 노인 보호구역 지정·관리에 따른 일반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집행기관의 철저한 대책 마련 및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